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8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9년 9월 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112호, 2006. 12. 28. 공포 · 2007. 7.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406호, 2007. 6. 29. 개정 ·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하고, 시에 상시적인 협의체계로서 자활기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1조)

-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하는 등 용어의 뜻을 정비함.(안 제2조)
-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자활기관협의체를 두도록 함.(안 제4조)
- 협의체 대표자회의의 의장의 명칭을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제4항 신설)
- 실무자회의의 협의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보완함.(안 제7조)
-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위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함.(안 제8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자활지원조례”를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운영사항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자활공동체”란 법에 따라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자활후견기관을”을 “지역자활센터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안건에 따라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로 운영하며, 대표자 회의는 협의체 참여단체의 장으로 하며, 실무자회의는 참여단체의 담당실무자로 한다.

② 협의체는 시와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장 1인 및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를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로 하고,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을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할”을 “총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년2회”를 “연 2회”로 하고,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3분의1”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현행 제4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2항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의 점검
8.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9.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10.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11.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8조 본문 중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7조에 따라”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매년1월말까지”를 “매년 1월 말까지”로 하고, “이때”를 “이 경우”로 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민간기관등”을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달구매시”를 “조달구매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60호
의결 년월일	2009. 9. 8. (제154회)

제출년월일 : 2009. 8. 2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112호, 2006. 12. 28. 공포·2007. 7.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406호, 2007. 6. 29. 개정·2007. 7. 1. 시행)됨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하고, 시에 상시적인 협의체계로서 자활기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1조)
- 나.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하는 등 용어의 뜻을 정비

함.(안 제2조)

- 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자활기관협의체를 두도록 함.(안 제4조)
- 라. 협의체 대표자회의의 의장의 명칭을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제4항 신설)
- 마. 실무자회의의 협의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보완함.(안 제7조)
- 바.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위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함.(안 제8조)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자활지원조례”를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운영사항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자활공동체”란 법에 따라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자활후견기관을”을 “지역자활센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안건에 따라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로 운영하며, 대표자 회의는 협의체 참여단체의 장으로 하며, 실무자회의는 참여단체의 담당실무자로 한다.

② 협의체는 시와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장 1인 및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를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로 하고,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을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할”을 “총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년2회”를 “연 2회”로 하고,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3분의1”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현행 제4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2항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의 점검
8.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9.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10.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11.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8조 본문 중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7조에 따

라”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매년1월말까지”를 “매년 1월 말까지”로 하고, “이때”를 “이 경우”로 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민간기관등”을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달구매시”를 “조달구매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천시자활지원조례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자활사업의 효과를 제고시켜 이들의 자활을 촉진하고 지역복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건부수급자"라 함은 법에 의하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 인자를 말한다 3. "자활후견기관"이라 함은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운영사항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p>4. "자활공동체"라 함은 수급자 및 이와 생활 수준이 유사한 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공동체를 말한다.</p>	<p>4. "자활공동체"란 법에 따라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p>
<p>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p>	<p>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p>
<p>제3조 (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공동체 및 자활후견기관을 말한다.</p>	<p>제3조(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 ----- ----- -----지역자활센터를-----.</p>
<p>제4조 (자활기관협의체) 시장은 영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p>	<p>제4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p>
<p>제5조 (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로 운영하며, 대표자 회의는 협의체 참여단체의 장으로하며, 실무자회의는 참여단체의 담당실무자로 한다.</p>	<p>제5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안건에 따라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로 운영하며, 대표자회의는 협의체 참여단체의 장으로 하며, 실무자회의는 참여단체의 담당실무자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협의체는 시와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실시기관,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p> <p>제6조 (협의체 대표자회의) ①협의체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자활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p> <p>②협의체 의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p> <p>③정기회의는 년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p> <p><신설></p> <p>④ (생략) 1. · 2. (생략)</p>	<p>② 협의체는 시와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p> <p>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협의체 대표자회의) ① ---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p> <p>② ----- 위원장----총괄-----.</p> <p>③ ----- 연 2회 -----, 위원장----- 3분의 1 -----.</p> <p>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3.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매년 1차 회의시)</p> <p>4. · 5. (생략)</p> <p>제7조 (협의체 실무자회의) ① (생략)</p> <p>② 정기회의는 분기 <u>1회이상</u>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한다.</p> <p>③ 실무자회의에서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협의한다.</p> <p>1. · 6. (생략)</p> <p><신설></p>	<p>3. ----- -----<u>해당</u>----- ----- -----</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7조(협의체 실무자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1회 이상</u> ----- -----.</p> <p>③ ----- <u>각 호</u>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의 점검</u></p> <p>8. <u>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u></p> <p>9. <u>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u></p> <p>10. <u>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u></p> <p>11. <u>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u></p>
<p>제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u>각호</u>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매</p>	<p>제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 -----<u>영 제37조에 따라</u> ----- ----- <u>각 호</u>----- ----- <u>매년 1</u></p>

현행	개정안
<p>1.~2. (생략)</p> <p>3. 시의 <u>조달구매시</u>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p> <p>4. <u>기타</u> 각종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조달구매시</u> ----- -----</p> <p>4. <u>그 밖에</u> -----</p>

< 관계 법령발췌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자활기관협의체)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12.2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 (지역자활지원계획)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당해 시·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시·도 자활지원계획을 보고 받은 때에는 시·도 자활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역주민·자활관련 전문가 및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 가.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 나.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매년도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회의사항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29]